



해오름손해사정(주)
SUNRISE SURVEYORS & CLAIM ADJUSTERS CO., LTD.

김윤호서울외과

의무기록사본
총 1 부
(표지제외)

Char

환자정보	차트번호	16856	의료기관	명 칭	김윤호서울외과의원
	환자성명	석향숙		요양기관번호	12317713
	주민번호	6410202*****		전화번호	02-929-2345
	피보험자	석향숙		팩스번호	02-929-0008
	전화번호			대표자	김윤호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127-32			

Assurance 2021-01-26

Dr. 김윤호 (일반외과 /)

사업장번호	000000000000	조합명칭		증번호	80848875529	전자서명여부	서명됨
보험구분	보험외래	초재진구분	초진	등록구분		진료구분	구분없음
처방전교부번호							

Present Illness

우측 유방 간지럽다; 2-3년전
 5년전 양측 맘모톰 수술; 암 근사치 나왔다?
 2-3년 전 마지막 검사
 가족력(-)
 분유수유
 호르몬제(-)
 갑상선 고주파 치료함
 유방; 양측 종양 및 낭종
 갑상선; 양측 종양 - 커지면 조직검사 예정
 1년 후 재진

Slip	청구코드	Item	Dos	Day	Dev
	v14	(비급여) 초진 유방/갑상선 초음파	1	1	
	M	유방 진찰함	1	1	
Disease	외래/입원	주/부/배제 코드	상 병 명		
외래	주상병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외래	부상병	D34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811-95-00065

김윤호서울외과 김윤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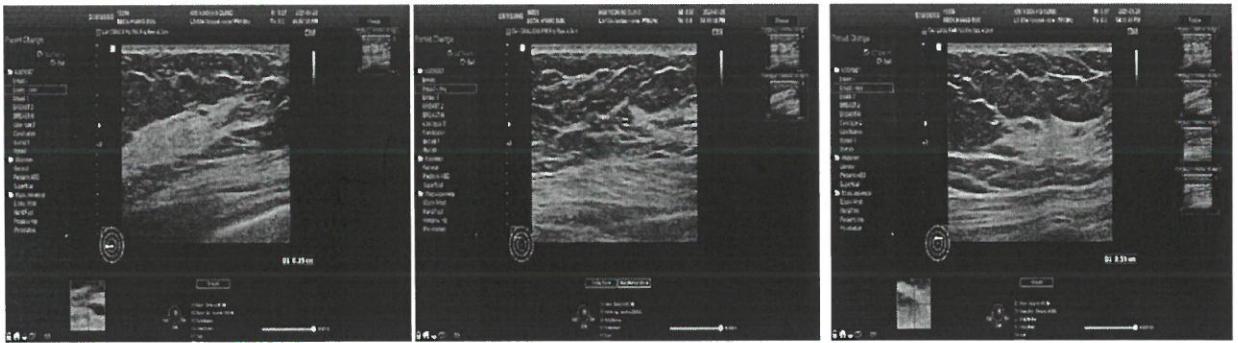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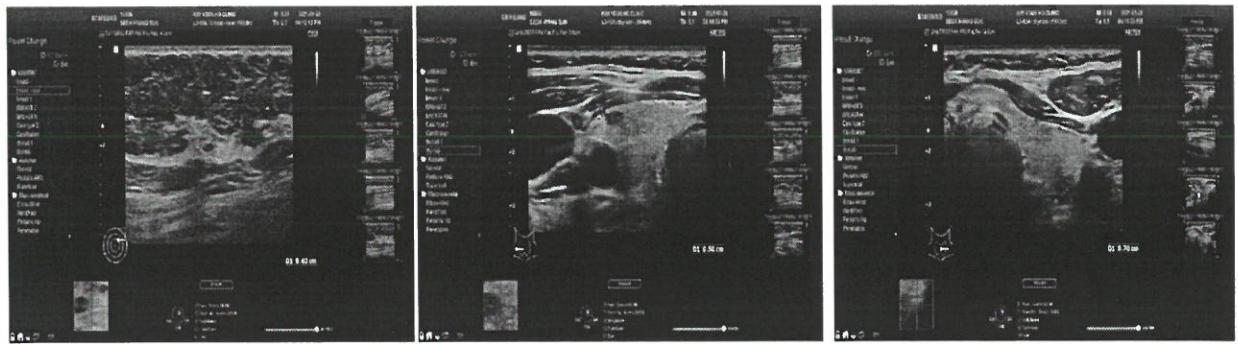
서울·성북구 동소문로 125

3층(동선동4가, 골든타워)

보건업 외과



유방/갑상선 초음파

차트번호	16856 -		
성명	석향숙	검사년월일	2021-01-26
주민번호	-	필름번호	
전화번호		기종,형번호	
검사부위	유방	갑상선	
진단	양측 유방/갑상선 결절		
검사의	김윤호		
			
촬영사진			
	<p style="text-align: right;">811-95-00065</p>		
소견	<p>양측 유방에 다발성 결절 관찰됨. 양측 갑상선에 결절 관찰됨. 갑상선 고주파 치료 흔적 보임.</p> <p style="text-align: right;"> 김윤호서울외과 김윤호 서울·성북구 동소문로 125 3층(동선동 4가, 몰튼타워) 보건업 외과 </p> <p style="text-align: right;">  </p>		
김윤호서울외과의원			

진료비 납입 확인서

환자성명	선택항목	주민등록번호				641020-*****		
진료일자 (진료기간)	구분	진료비 내역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 (①+②+③)	급여 ① 공단부담액	비급여 ② 환자부담액	환자부담액 ③	환자부담총액 (②+③)	카드	현금영수증
2021-01-26	외래	156,480	11,580	4,900	140,000	144,900	144,900	0
계		156,480	11,580	4,900	140,000	144,900	144,900	0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144,900	

811-95-00065
 김윤호서울외과 김윤호
 서울·성북구 동소문로 125
 3층(동선동4가, 골든타워)
 외과
 보건업

요양기관 종류	의원	사업자등록번호	811-95-00065	전화번호	02-929-2345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25 3층(동선동4가, 골든타워)				
상호	김윤호서울외과의원		성명	김윤호	
2025년 03월 24일					
※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인)	

진료비 내역서

차트번호: 16856	환자성명: 석향숙	주민번호: 641020-2*****	진료기간: 2021-01-26 ~ 2021-01-26
병원명: 김윤호서울외과의원		전화번호: 02-929-2345	FAX: 02-929-0008
주 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25 3층(동선동4가, 골든타워)			

항목	청구코드	명칭	횟수	일수	급여구분	단가	금액
2021-01-26	(보험외래)						
진찰료	AA154	초진진찰료	1	1	급여	16,480	16,480
기타		초진 유방/갑상선 초음파	1	1	비급여	140,000	140,000
합 계 :							156,480
진료비 총액 :							156,480

311-95-00065

김윤호서울외과 김윤호
 서울 · 성북구 동소문로 125
 3층(동선동4가, 골든타워)
 보건업 외과



외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환자등록번호 16856	환자 성명 석향숙		진료 기간 2021-01-26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공휴
진료과목 일반외과	질병군(ORG)번호		병실 환자구분 보험외래	영수증번호 20210126-0007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산정내용	
항목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⑥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		156,480	
	⑦ 공단부담 총액 (②+⑤)	11,580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⑤)+③+④	144,900		
	⑨ 이미 납부한 금액			
	⑩ 납부할 금액 (⑧-⑨)	144,900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144,900		
	납부하지 않은 금액(⑩-⑪)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기본 항목 선택 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서류비 유방갑상선초음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선별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질병군 포괄수가 합계 상한액 초과금			811-95-0006 김윤호서울외과 김윤호 서울·성북구 농소문로 125 (동선동4가 골든타워) 02-929-2345	
요양기관 종류 의원	사업자등록번호 811-95-00065	전화번호 02-929-2345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농소문로 125 3층(동선동4가, 골든타워)				
상호 김윤호서울외과의원			대표자 김윤호	(인)
2025년 03월 26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p>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 종별, 환자자격,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질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 CT · MRI · 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50%, 80%, 90%)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제외)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각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 본인부담 및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 4. "질병군 포괄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여러 의료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군의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라도 비급여대상이나 이송처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p>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진찰료 등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